



—홍보부—

정부는 1987년 6월 경남 양산군 하북면 소재 원효농원에서 국내 사상 첫 돼지오제스키병이 발생하자, 이의 확산방지와 박멸을 위해 88년 3월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을 제정·고시하고, 간이진단키트를 보급, 혈청검사를 확대하는 등 나름대로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정책을 신속히 수립, 추진해 왔다.

특히 금년에도 정부는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을 위해 종돈장과 허가·등록 양돈장을 대상으로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연 2회에 걸쳐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를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하는 등 방역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정부는 금년도에 종돈장 7,200두, 양돈장 60,100두, 도축장 출하돼지 74,000두, 기타 32,700두 등 총 174,000두에 대한 혈청검사를 3억7천6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실시하고, 양성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살처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방역정책에도 불구하고 87년에 첫 발생한 돼지오제스키병은 '88년과 '89년도에 양돈밀집지역인 남양주군 진접면과 용인군 유운리 일대에서 집단으로 발생했고, 금년도도 규모는 적지만 계속 발생되고 있어 정부의 방역정책에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하고 있다.

그러면 정부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보완대책에 관해서는 특집 뒤편에서 논하기로 하고, 본고에서는 우선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동안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을 위해 취한 일련의 조치들을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요약, 소개하기로 한다.

1. 정부의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조치 내역

가. 양성축 발생농장에 대한 조치

정부는 혈청검사 결과 양성축이 발생한 농장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우선적으로 가축 이동제한, 인원과 차량의 출입통제 및 농장 내외의 소독실시에 철저를 기하는 등 긴급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내 처음 발생된 경남 양산군 원효농장은 감염 전파 요인을 완전 배제하기 위하여 사육돈 954두 전두수를 살처분 매몰하고 농장을 폐쇄토록 조치하였고, 1987년 11월에 발생한 경기도 화성군의 한일농장에 대하여도 국내 발생 초기단계에서 동일한 방역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한일농장의 경우 대규모 사육농장으로 방역 대책에 대한 농장측의 이의제기 및 살처분 보상금 시가

전액 지급요구 등 어려운 문제점이 많았으나, 전체 양돈업계의 피해 방지를 위한 축주의 이해와 협조로 사육 돼지 8,599두 전두수를 살처분 매몰하고 6개월간 사육 금지 하였다.

이와같은 강력한 방역조치로 인하여 해당농장의 전파요인은 배제할 수 있었으나, 본병 발생시 농장폐쇄로 인한 생업기반 붕괴, 살처분 조치에 대한 불안감 및 보상금 시가 전액지급요구 등으로 인해 농장에 대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피해발생 사실을 은폐 또는 살처분 조치에 극력 반대 하는 등 처리기간의 지연으로 장기간 소요되어 오히려 문제점이 더욱 커지고, 조기 근절을 위한 방역 목표와는 상반되는 면이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방역조치에 대한 부분적인 방향 전환이 불가피 하였다.

수차에 걸친 협의와 검토를 거친후 발생농장에 대한 방역대책을 일부 전환함으로써 양돈농가에서 자율적으로 검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호응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제까지의 전두수 살처분 및 농장 폐쇄 조치를 완화하여 우선 발생농장의 전두수를 검사하여 양성축을 색출한 후 이를 살처분하되, 매 3개월마다 검사를 계속하고 연속 2회 전두수 음성일 경우에는 본병의 근절농장으로 인정하며, 음성축에 대한 조치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일정한 도축장에서 가축방역관 입회 감독하에 도축하도록 방역대책을 전환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매 3개월 간격으로 전두수 검사하여 연속 2회 전두수 음성인 농장은 경남 양산군의 한성농장, 수정농장 및 이강식농장으로써 현재 본병의 근절농장으로 확인되었다.

나. 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제정

정부는 오제스키병 발생농장에 대한 긴급방역조치 및 검사방법 등을 규정하여 일관성있는 방역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1988년 3월 4일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을 제정·고시(농림수산부 고시제 88-8호) 하였고, 검사결과 조치사항 등을 보완하여 1988년 12월

31일 개정고시(고시 제88-39호)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사 대상

축산법에 의거 등록된 종돈장과 등록 또는 허가된 양돈장 및 검사 필요성이 있는 지역의 돼지를 대상으로 검사한다.

○검사실시 기준 및 대상축 선정

종돈장에 대한 검사는 매 6개월마다 1회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양돈장에 대한 검사는 발생이 의심되거나 검사 필요성이 있을 때 실시토록 하였다.

검사대상축은 종돈, 모든 또는 개체의 증상으로 보아 검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순서로 선정하고, 양돈장의 돈사별 고른 비율로 채혈하되 <표1>과 같이 기준두수 이상을 검사하여야 하며, 또한 발생분포 확인이나 추적조사를 위하여 도축장에 출하·도축중인 돼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1> 검사대상 기준두수

돼 지 사 육 두 수	검 사 두 수
500두 이하	20두 이상
500두 이상~1,000두 이하	30두 이상
1,001두 이상~5,000두 이하	50두 이상
5,001두 이상~10,000두 이하	70두 이상
10,000두 이상	100두 이상

○검사기준

본병의 검사는 시·도 가축위생시험소(현재 36개소 운용중)에서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가축위생연구소에서도 실시한다.

○검사방법

오제스키병 간이진단키트로 검사하거나 또는 혈청중화시험을 실시하며 감염여부를 판별한다.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시·도지사는 양성축이 발생된 농장에 대하여 이동제한, 출입제한 및 소독실시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고, 사육중인 돼지 전두수를 검사하여 양성축을 색출·살처분 하여야 하며, 음성축은 지정된 도축장에서 가축

방역관 지도·감독하에 도축하도록 하되, 해당 도축장의 시설검사를 강화하고 도축장 내의 및 운반차량의 소독 실시, 부산물 처리확인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양성축 발생농장은 매 3개월마다 전두수 검사를 실시하고 연속 2회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일 경우에 본병의 근절농장으로 인정한다.

또한 종돈장의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에는 가축위생시험소장이 <표2>와 같이 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비발생 농장 표시판을 <표3>과 같이 종돈장 정문에 부착·게시하도록 하였다.

<표2> 오제스키병 검사증명서

오제스키병 검사증명서			
○발급번호: 제 호			
종 돈 장	명 칭		등 록 번 호
	소재지		전 화 번 호
	경영자		주민등록번호
사육두수	종 돈:	두	
	모 돈:	두	계 두
	육성돈:	두	
	자 돈:	두	
검사목적 돼지오제스키병 감염확인을 위한 혈청검사			
채혈일자		검사된 월 일	
검사두수			
판 정 검사결과 오제스키병이 없음			
위와같이 오제스키병 혈청검사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장(지소) 장		인	

190mm×268mm(신문용지 54g/cm²)

<표3> 오제스키병 비발생 농장 표시판

농장명:
돼지 오제스키병 검사결과 발생이 없는 농장임.
19 년 월 일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장(지소)장

○수입종돈에 대한 관리강화

종돈수입시 검역기능을 15일간에서 30일로 연장하여 검역을 강화하고 정밀검사·소독 등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검역 종료 즉시 동물검역소장은 검역결과를 해당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관할 가축위생시험소로 하여금 검역종료일로부터 3개월동안 입식농장의 별도 격리 돈사에서 사육토록 하며, 수시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는 등 특별관리하여야 한다.

○종돈등록 및 검정시 검사확인

종축 등록기관과 능력검정기관에서는 당해 반기중 오제스키병 혈청검사 실시결과 음성인 농장에서 생산된 돼지에 한하여 등록 또는 검정을 실시해야 하며, 도지사는 종돈장 정기점검시 혈청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다. 혈청검사 확대 실시

정부는 오제스키병의 조기근절을 목표로 종돈장과 대규모 양돈장 및 발생 의심지역을 중점대상으로 검사를 확대하는 방역대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새로 개발된 간이진단키트를 1989년부터 혈청검사에 활용함으로써, 검사 소요시간을 대폭 단축하여 단 시간내에 판별이 가능하게 되었고, 가검재료도 간편히 채취하여 검사할 수 있게 되었다.

금년중 본병의 방제사업은 모든 종돈장에 대하여 3~4월과 9~10월 기간중 2회 검사를 실시하며, 허가 또는 등록된 양돈장에 대하여는 연 1회 검사하고, 기타 검사가 필요한 지역의 양돈장을 대상으로 수시로 검사하고 있다.

2. 정부가 보는 방역상의 문제점

정부는 본 질병 발생이래 신문, 잡지, TV, 라디오 등의 홍보를 통하여 본 질병의 조기근절을 위한 필요성을 인식한 양돈농가에서는 자율적인 방역조치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양돈농가에서는 무리한 요구와 검사를

기피,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검사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의심돈을 방매하여 확산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돼지내장을 무분별 구입, 급여함으로써 동 질병의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밀집사육에 대하여는 전양돈농가가 확고한 방역의지를 갖고 정부의 방역정책에 적극 호응치 아니함으로써 일부 양돈장에만 검사를 하여 양성돈을 색출하여도 인근 지역이 오염되어 있어 별 효과를 얻지 못할 뿐 아니라, 검사하여 양성돈을 색출, 살처분을 하여도 전체의 사육두수는 감소되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로 대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양돈농가에서는 외국의 경우와 같이 혈청학적인 양성돈에 대하여는 식용으로 공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경제적인 피해를 덜 보게 해 달라는 요청도 있다.

정부는 또한 많은 두수의 양성돈을 살처분하여 매몰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반발 등 매몰 장소의 선정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며, 살처분 보상금 확보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3. 금후 정부의 방역추진 대책

가. 발생농장에 대한 대책

정부는 아무리 이상적인 방역정책이라 할지라도 양축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없다면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정된 예산범위내에서 혈청검사 확대실시비와 살처분조치에 따른 보상금 등을 확보해야 하고, 국내 방역행정 체계를 보완하여 양돈농가의 검사참여 호응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본병의 조기근절을 위해 방역실시 요령에 의거 혈청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발생농장에 대하여는 양성축을 색출하여 살처분하는 방역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집단 사육농장의 방역상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 개선 및 농장이전 등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 백신 사용문제

이병이 상재화되어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일부 국가에서만 공여지책으로 백신을 사용하고 있으나, 예방접종된 개체가 면역을 획득하여도 오제스키 바이러스에 재감염되며, 감염후 발병(증상)은 저지되나 야외독이 감염되었을 경우 보균돈(carrier)이 되므로 이병의 근절에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백신접종을 허용 할 경우 백신구입비와 실시비 등이 막대하므로, 현재의 발생 상황으로 보아 백신접종 허용을 검토할 시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 역학조사 강화

오제스키병 감염여부에 대한 검사 및 진단에 사용되는 진단키트의 효능을 배가시키고 사용에 편리하도록 개선하여 활용도를 확대하였으며, 양성축 발생농장 및 인근지역 양돈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적인 발생 상황이나 전파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축장의 출하돼지 일제검사를 금년부터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발생 의심지역과 수입종돈 입식농장, 종돈장 및 밀집사육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를 계속 중점 실시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4. 맺는말

이상 정부의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으나, 정부의 방역정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양돈농가에서 자율적으로 농장단위의 방역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며, 전체 양돈산업 보호를 위해 검사에 적극 참여하고, 또한 돼지 입식시에는 반드시 검사를 실시하여 농장에 감염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관련단체와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 및 적절한 홍보·지도 등이 있어야만 본병의 피해를 막고 국가 경제적으로도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